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서류 접수 방법을 ‘우편접수’로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불가)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 시공사에서는 책임 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0.03.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7-5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49층, 8개동 총 1,100세대
- 타입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총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내)

주택형	84.5400A	84.8200B	84.0600C	84.5700D	84.5700	84.8800E	84.9500F	99.1000A	99.1000	99.8900B	155.7800	합계
타입	84A	84B	84C	84D0	84D1	84E	84F	99A0	99A1	99B	155	
총세대수	172	168	150	73	47	97	97	72	100	120	4	1,100
특별공급 세대수	17	16	15	7	4	9	9	7	10	12	—	106
예비자	51	48	45	21	12	27	27	21	30	36	—	318

II 공급일정 (예정)

구분	일정	비고
사전 우편접수	2020.05.25.(월). ~ 05.29.(금)	당사 홍보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판매시설동 125호)
입주자모집공고	2020.06.11.(목)	일간신문 및 분양홈페이지
특별공급 청약	2020.06.22.(월) 08:00~17:30	인터넷청약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당첨자발표	2020.06.30.(화)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계약기간	2020.07.12.(일) ~ 07.18.(토)	당사 건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3번지)

- ※ 우편 소인 날짜 기준 : 2020.05.29.(금)까지 (등기발송 필수)
- ※ 사전 우편접수 기간 내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건본주택(1899-1010)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사전접수 구비서류

필수	해당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발급(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신청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1부		인감날인된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인감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이상 기준(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재직회사 인감 날인 제출
○		무주택 서약서		당사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	이름, 청약예치금,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류		팩스 또는 인터넷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
○		신분증 사본		본인발급용(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서명)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날인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와 동일)
○		주민등록표초본 1부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포함 (상세발급)
	○	기타	-	동점자 발생으로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예정일인 2020.06.11.(목) 3개월 이전(2020.03.11.) 이전까지 발행분(세대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접수 가능(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IV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 국내무주택자)으로서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6.11.(목)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예외임.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제외한다.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 대상자 선정방법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함.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확정자 및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사업주체는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 까지 게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그 선정결과를 통보함.

VI 유의사항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외 타지역 지사에 근무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함.
-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됨.
- 구비서류 중 재직회사 서류의 경우 원본(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을 제출하여야 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된 타입 외 다른 타입 청약 시 당첨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 불가함.
-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 - - , 휴대전화 :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직책 및 직위			
소재지 주소	☎ - -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			

2. 가족사항 (본인,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 전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족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이 가능함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역	위치	신청주택형 (㎡)							비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7-5번지 (A14BL)	☐ 84A	☐ 84B	☐ 84C	☐ 84D0	☐ 84D1	☐ 84E	☐ 84F	☐ 99A0	☐ 99A1	☐ 99B	분양(O)

4. 첨부서류

공통서류	내국인	외국인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1. 신분증 []	1. 외국인등록증 []
2. 사업자등록증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국내거소 신고사실 확인서 []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의 경우) []	3.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의 경우) []	4. 주민등록표등본(본인) []	
5. 재직증명서 []	5.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6. 주민등록표초본(본인) []	
7.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7. 가족관계증명서 []	
8. 무주택 서약서 []		
9.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0.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해당 사항 []에 “O”으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신 청 인

(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업체 :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성명		신청주택형(㎡)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연락처	

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 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서약내용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0.06.11.(목) (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소형저가 주택은 일반 공급에서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임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에 따름(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인)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인)

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 (인)

대리 신청시 신청인 : (인)

※ 개인 인감도장 날인할 것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를 확인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 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유티파트너스
개인정보의 수집·활용항목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서상 기입된 신청자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목적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A14BL)’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분양완료 후 30일 이내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활용을 거절하실 수 있으며 거절하실 경우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신청자 본인 성명 (본인인감날인)